

미국 계란 연구 및 소비자 정보법 (2)

(1974年 10月 1日 美公法 第93—428號)

(3) 이 법에準하여 制定한 規則이나 規定의 施行에 長官과 鷄卵委員會가 適合하고 必要하며, 그들로 하여금 情報와 資料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孵化機 運轉者, 初生雛 販賣에 從事하는 者와 初產鷄 商人, 市販鷄卵의 生產에 從事하는 者와 自己가 生產하는 鷄卵을 포함하여 鷄卵生產者로부터 鷄卵을 買入, 加工하여 市場에 出荷準備를 하는 者 또는 계란을 販賣하는 者, 老鷄를 購入, 販賣 또는 加工하는 者 등은 이들에 의해서 報告된 報告書들을 整理하고 規則에 依해 規定한 內容을 담을 수 있으며 閱覽할 수 있도록. 이 法에 準하여 制定한 規則이 要求하는 書籍과 記錄들을 維持하고 利用한다. 但, 그렇게 하여 얻은 모든 情報에 대하여 農務省과 鷄卵委員會의 모든 職員과 그 情報에 接하는 傘下機關의 모든 職員들은 機密을 지켜야 한다. 다만 長官이 適切하다고 判斷하는 境遇에 限하여 獲得한 情報를 公開하며, 그것도 長官의 指示나 要請에 의하거나 長官 또는 美國의 어떤 公務員과 關係가 있는 訴訟이나 行政公聽會에서만 公開되며, 그 訴訟이나 行政公聽會는 公開할 情報가 獲得된 關係規定의 內容을 포함해야 한다. 本條에 있는 어떤 것도 다음 각 號를 禁할 수 없다. ① 規則 또는 蔽集된 統計資料에 關係있는 사람들의 報告書를 基礎로 한 一般陳述書의 發行. 여기서의 陳述書는 어떤個人이 提供한 情報와 同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② 特別期間 中 鷄卵委員會에서 結定한 債還에 관한 一般聲明書를, 長

官의 指示에 依한 公表 ③ 規則中 特別規定에 따른 規則 違反者 姓名을, 長官의 指示에 依한 發表. 이 項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裁判에 따라 1000弗 以下의 罰過金에 處하거나 1年 以下の 徵役에 處하여 鷄卵委員會 또는 農務省의 職員은 職位解除한다.

(4) 이 法에 明示한 條件들에 附隨의이거나 矛盾되지 않은 條件들과 이 規則中 其他 規定을 有效케 하는데 必要한 條件들을 規定한다.

第8條 (規則內의 要求條件) 이 法에 準하여 制定한 規則은 다음 條件들을 포함한다.

(1) 18人 이하의 委員과 副委員으로 構成되는 鷄卵委員會는 長官이 設置, 任命하며, 그 委員會의 權限과 義務는 ① 鷄卵委員會의 規定에 따라 規則을 執行하며, ② 規則內에 있는 規定을 有效하게 하고 命令과 施行令을 만들며, ③ 規則을 違反時 異議事項들을 接受하고 調查하여 長官에게 報告하며, ④ 規則에 대한 修正案을 建議하는 등의 權限만을 포함한다. 鷄卵委員의 任期는 2年이며 3回 이상連任할 수 없다. 단, 初任일 경우 比例的으로 2年과 3년의 任期가 될 수 있다.

(2) 鷄卵委員과 副委員은 適當한 機構, 協會 또는 協同組合과 法 第16條에 準하여 認定되는 團體에 의하여 委囑된 指名大會에서 選出하여, 長官이 任命하는 鷄卵生產者 또는 鷄

卵生產者 代表들로 構成되며, 만약 長官이 實제로 많은 鷄卵生產者들이 각 團體의 會員이 아니거나 그 團體와 關係가 없기 때문에 해당 機構, 協會 또는 協同組合에 의해 代表될 수 없다고 判斷되면, 委員會에서 鷄卵生產者들의 代表者가 長官이 許可한 대로 美國의 각 地域에서 생산되는 鷄卵生產量을 實質的으로反映할 수 있도록, 長官이 認定한 方法으로 鷄卵生產者들이 만든 指名大會를 通해서 委員을 選出한다. 但, 각 鷄卵生產地域에 鷄卵委員會에서 最少限 代表者 1人을 選出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한다.

(3) 本條 第7項에 規定한 것과 같이, 鷄卵委員會는 廣告, 販賣促進, 消費者教育, 研究 및 開發計劃이나 事業을 開發하여 長官에게 報告하고 그 許可를 받으며, 모든 計劃이나 事業은 施行하기 전에 반드시 長官으로부터 許可를 받아야 한다.

(4) 本條 第7項의 規定에 依據, 鷄卵委員會는 廣告, 增進, 消費者教育 및 開發計劃에 關한 經費를 포함하여 規定의 運用上豫想費用 및 支出에 關한 回期別豫算을 長官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는다.

(5) 각 鷄卵生產者는 鷄卵委員會의 規則에 의하여 任命된 鷄卵取扱者에게, 法의 規則이 공포된 이후 農務省에서 發生되는 예비비와 經常費를 포함하여, 長官이 定한 期間동안 이 規則下에서 鷄卵委員會에서 發生하는 諸費用과 支出金을 鷄卵生產者를 대신하여 取扱하는 市販鷄卵의 상자數에 근거를 두어 산출한 額數와 規則에서 規定하는 方法으로 支出한다. 그 鷄卵取扱者는 鷄卵生產者로부터 그 額數를 받아서 規則이 規定한 方法으로 꼭같이 鷄卵委員會에 納付한다. 規則에 規定한 金額의 比率은 상자 1個當 5센트를 超過할 수 없으며 또한 均等해야 한다. 金額의 納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鷄卵委員會의 規則은 養鷄業에서 利用되는 마케팅의 慣例와 方法이 相異함을 認識할 수 있는 他鷄卵取扱者들을 指名한다. 長

官은 그 金額의 納付에 관하여 規則과 關連 있는 여하한 사람에게도 訴訟을 提起하며 美國地方裁判所에 論爭의 多寡를 불문하고 그런 訴訟을 관할할 수 있는 司法權을 賦與한다.

(8) 鷄卵委員會는 帳簿와 각종 記錄들을 維持하고 長官이 規定한 것과 같이 수시로 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모든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關한 鷄卵委員會의 會計는 일체 鷄卵委員會에 委任한다.

(9) 卵委員會는 長官의 同議를 얻어, 本條 第7條의 (1)項과 (2)項에 準하는 規則下에서 認可되는 모든 活動의 遂行과 發展 그리고 規則에 準하여 納付된 基金에 대한 費用의 支出에 關한 契約 및 協定에 관여한다. 모든 契約과 協定은, 契約人들이 鷄卵委員에 그 計劃과 事業의 시험에서 發生하는豫想費用을 나타내는豫算案과 함께 計劃案 또는 事業案을 提出하여 함을 規定하며 모든 計劃이나 事業은 長官의 許可에 의거 효율적으로 施行하고, 契約當事者는 모든 業務에 관하여 正確하게 記錄을 유지하며 實施한 모든 活動과 收入 및 支出되는 基金에 대한 會計, 그리고 長官이 要求하는 기타 報告書를 提出해야 한다.

(10) 本規則下에 鷄卵委員會이 확보한 基金은, 本條 (1)項의 ①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政府 政策이나 法에 영향을 주는 目的에 使用해서는 안된다.

(11) 鷄卵委員과 副委員은 無報酬로 奉仕하나, 鷄卵委員會의 委員으로서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 發生하는 費用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는다.

第9條 (一般投標의 要請와 鷄卵生產者の 賛成) 鷄卵生產者들이 規則의 制定에 賛成하고 좋아하는 지의 如否를 確認할 目的으로, 長官이 結定한 一定期間에 市販鷄卵의 生產에 종사하고 있는 鷄卵生產에 종사하고 있는 鷄卵生產에 全體를 對象으로 長官은 一般投標을 實施한다.

이 法에 準하여 制定한 規則은 投標에 參가한 生產者의 2/3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장관이 定한 一定期間동안 投標에 參가한 生產者의 多數가 生產하는 總市販鷄卵의 2/3 이상을 生產한다고 長官이 認定하면 이 法은 效力を 發生한다.

第10條 (規則의 停止와 廢止) (1) 長官은 이 法 下에서 制定한 모든 規則과 規定이 宣言된 이 法의 政策을 방해하거나 有效케 하지 못하면 어느 때고 그 規則과 規定의 施行을 廢止 또는 停止한다.

(2) 長官은 一般投標에서 規則에 賛成한 鷄

卵生產者 중 10% 이상의 生產者들이 要請時, 一般投標를 實施하여 그 規則의 廢止 또는 停止에 관한 生產者들의 賛成 如否를 結定하며, 그 規則의 廢止 또는 停止를, 그 投標에 參가한 鷄卵生產者(長官이 定한 一定期間 동안 市販鷄卵生產에 종사하는 者)의 多數가 賛成하거나, 投標에 參가한 全鷄卵生產者가 生產한 總鷄卵生產量의 50% 이상을 生產하는 鷄卵生產者들이 賛成한다고 판斷되면 長官은 6개월 후에 그 規則을 廢止하거나 停止한다.

(3) 모든 規則 또는 規定의 廢止 또는 停止가 이 法의 趣旨를 포함하는 規定으로 看做되지 않는다. <계속>

◆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정정기사 ◆

본지 8월호에 게재한 소득세 감면 신청중 75년 8월 31일까지 감명신청을 한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일선 세무서에서 개정소득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것을 편집부가 오보한 것이오니 죄송 없기를 바랍니다. 이는 76년 2월 말일까지 임을 알려드리며 아래에 해당 법조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실>

소득세법 제6조 3항 : 종합소득금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잔존기간에 따라 감면한다.

1. 당해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다음 년도부터 6년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100
2. 제 1 호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

4항 :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00조 :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 퇴직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의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때도 적용한다.

제106조 : 제 6 조 제 1 항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 제95조, 제100조, 또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